

인천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5255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5255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39787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준석

변론 종결 2020. 1. 14

판결 선고 2020. 2. 1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397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 2. 2. 접수 제 5998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그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으로 볼 수도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제 2쪽 제 11행의 "(이하이 사건 근저 당권이라 한다)" 를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라고 하고, 그에 따른 담보권인근저당권을 끼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로, 제4쪽 제16행의 " 매도" 를 " 매매"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판사 서인덕판사 이재환

별지